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7980 판결 [연대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798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0123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담당변호사 김선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중용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3. 4. 28.

판결 선고 2023. 6.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1가단50123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707,410원 및 그중 117,296,9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 및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역할을" 다음에 "각각"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9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제1심증인 G의 증언,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மிழ 않는 부분 제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18,482,760원"을 "18,382,76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8행의 "소멸시효" 앞에 "단기 5년의"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의 "이 사건 차용증은 원,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금전관계를 정산하는 취지로 작성된 처분문서로 봄이 타당하므로"를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정산에 관하여 합의한 처분문서로 봄이 타당하며"로 바꾼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기초한 것이고,"를 "기초한 것으로"로 고치고, 그 뒤에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E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 을호증은 원고 내지 원고의 배우자 계좌로 피고가 주장한 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을 보여주는 거래내역일 따름이고, 위 증인은 자기가 18,382,760원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명쾌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아니한 채 '그러니까 복잡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만 진술한바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의 "피고의"를 "피고가 주장하는"으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웅기

판사이원중

판사김양훈